

[별첨] 개인과외·교습소 운영 안내문

아래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개인과외·교습소 운영 안내문이다.
선생님이 운영하실 홈스쿨의 해당 교육지원청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란다.

[개인과외교습자]

1.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대상

- ①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
(교습자의 주거지, 학습자의 주거지)
- ②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므로 과외교습이 불가능합니다.
- ③ 재외동포(F-4), 거주(F-2, F-6)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신고 가능합니다.
- ④ 현직교원은 과외교습행위 불가(기간제 교원 포함)
※ 대학생, 대학원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(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)

2. 세부신고 요령

가) 신고장소

- (1)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(2)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
나) 변경 신고 내용

- ①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 (제출서류 - 주민등록증 사본)
- ② 교습과목
- ③ 교습료

3.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가능한 인원수

- 동일시간내에 9인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.

4. 명칭 및 간판은 학원이나 교습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
5. 소득신고는 성별, 연령, 직업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대학(원)재학생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
(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)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
|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| | 처리기간 즉시 | 사 전 (3cm×4cm) | |
| ①성 명 | 한 글 한 자 | ②주민등록번호 | | |
| ③주 소 | () | | | |
| ④학 령 및 과 목 | | | | |
| ⑤자 격 | | | | |
| ⑥경 령 | | | | |
| ⑦교습과목 및 교습료 | | | | |
| 교습료 | 초등학교 | 중학교 | 고등학교 | 비 고 |
| 교습과목 | 월 월 (1시간당 원) | 월 월 (1시간당 원) | 월 월 (1시간당 원) | |
| | 월 월 (1시간당 원) | 월 월 (1시간당 원) | 월 월 (1시간당 원) | |
| ⑧교 습 장 소 | | | | |
| ※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. ※ 비고란에는 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| | | | |
| 귀 하 | | | | |
| 구비서류(과 1부) | | | 수수료 | |
| 1. 주민등록증 사본 | | | 없 음 | |
| 2. 최종학력증명서 | | | | |
| 3. 자격증 사본(해당자의 경우에 한합니다) | |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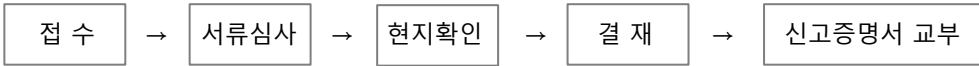
[교습소]

□ 교습소 설립·운영신고

가) 근거법령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, 시행령 제13조, 시행규칙 제11조

나) 처리과정



다) 민원상담시 확인·안내해야 할 사항

√ 교습자 자격

√ 건축물 용도, 직통계단, 위반건축물

√ 유해업소

√ 시설·설비기준 및 1인1개소1과목 교습여부

√ 명칭 (나이스 확인)

√ 구비서류

라) 구비서류 (처리기한 5일)

- ① 교습소설립·운영 신고서 1부
- 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
- ③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④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
- ⑤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
- ⑥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
- ⑦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⑧ 교습자의 증명사진(3x4cm) 2매

□ 교습소 설립·운영 신고 검토서

1. 신청개요

| 교습소명 | 신고자 | 신고위치 | 신청내용 | 비고 |
|------|-----|------|---------|----|
| | | | 교습소설립신고 | |

2. 검토내용

| 번호 | 검토사항 | 검토자료 | 검토결과 | 적합여부 |
|----|--|----------|------|------|
| 1 | 서류검토-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| | | |
| 2 | 교습자 자격- 1년 이내 불법운영으로 인하여 동일한 교습과목을 폐지처분 받은 자가 아닌지? 강사자격은 준수하는지? | -직권폐원 | | |
| 3 | 건축물용도- 건물의 용도는 적합한가? | -건축물관리대장 | | |
| 4 | 직통계단-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거실면적의 합계가 200㎡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였는가?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| -건축물관리대장 | | |
| 5 | 유해업소- 동일건축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는 없는가? | -출장확인 | | |
| 6 | 이중등록- 교습소설립예정지가 기존에 다른 학원(교습소)가 등록되어 무단폐원한 곳은 아닌지? | -나이스확인 | | |
| 7 | 시설·설비- 시설 및 설비현황은 적합한가? | -건축물관리대장 | | |
| 8 | 인원-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은 적정한가? | | | |
| 9 | 명칭- 다른 교습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은가? | -나이스확인 | | |

□ 교습소 설립(변경) 신고 안내

1. 교습소의 정의

"교습소"라 함은 초등학교,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·기술·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함
⇒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

2. 교습자의 자격

- ◎ 2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자, 실기교사자격증 취득자, 학원강사 자격해당자
- ◎ 『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

3. 교습소의 건축물용도

◎ 교습소는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,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(자목)[(동 건물의 모든 학원 및 교습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하), 단, 주거전용지역은 제외함] 또는 교육연구시설(동 건물의 모든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일 경우)이어야 함

◎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: 학원, 교습소, 독서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㎡이상인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

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 (2003.02.24 개정)

※무허가건물(위반건축물), 지하실(지층) 및 옥상은 불가능하며, 주택에서는 설립할 수 없음

4. 교습소의 교육환경 관련제한

◎ 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됨. (단, 당구장,만화가게, 『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』 제2조 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은 제외)

- 가. 극장,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, 천연가스,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
- 나. 카바레, 스탠드바,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(룸싸롱, 카페, 인삼차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)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무도장, 무도학원, 담배자동판매기, 노래연습장
- 다. 컴퓨터게임장,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
- 라. 호텔, 여관, 여인숙,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
- 마. 위험물 취급업소, 전염병요양소, 진료소, 폐기물(쓰레기)수집장소
- 바. 사행행위장, 경마장
- 사.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(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의2참조)
- 아. 전화방, 성기구 취급업소, 비디오물 감상실

◎ 교습소와 동일 건물일 경우

교습소를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,650㎡ 이상 건축물로, 교습소가 유해업소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교습소를 설립 할 수 없음

| | | | | |
|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|
| 가능 | 6m(불가능) | (불가능) | 6m(불가능) | 가능 |
| 가능 | 20m(불가능) | 유해업소 | 20m(불가능) | 가능 |
| 가능 | 6m(불가능) | (불가능) | 6m(불가능) | 가능 |

5. 교습소 명칭

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, 그 다음에 “교습소”를 붙여 표시한다. (예시: 홍길동 피아노교습소, 정○○ 미술교습소)

※ 간판 및 사인물은 신고된 명칭과 동일하여야 함.

6. 교습의 장소 등

- 가.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(피아노교습은 5인)이하일 것
- 나. 교습소 강의실의 1㎡당 수용인원이 0.3인 이하일 것(1평에 1명 정도 수용)
 - ⇒ 유의사항 : 시설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니라, 계단 및 통로 등을 제외한 강의실이나 실습실 등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한 면적임.
 - ⇒ 피아노교습소는 교육환경 상 방음시설을 하여야 함
 - ⇒ 교습소의 강의실이나 실습실의 개수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함. (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를 5개 이하 설치가능)

7. 교습소 운영에 따른 유의사항

가. 교습자는 교습소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,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

나. 교습자는 교습소의 교습자, 위치, 교습과목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.

(구비서류 참고)

다. 강사채용 할 수 없음

8. 설립 시 신고할 경우 구비서류

- 가. 교습소의 위치도(약도)
- 나. 교습소의 시설평면도
- 다. 교습자의 주민등록증
- 라. 교습소의 건축물대장(표제부에 건물소유주 표시가 없는 경우 전유부 포함제출)
- 마. 건물사용증명서류(타인소유); 건물임대계약서 원본 또는 무상사용승낙서(인감 도장 날인)
- 바.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- 사. 사진 2매(3*4)

9. 기타

○ 건물임대계약은 반드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물소유주와 계약하여야 하고, 건물소유주가 2인 이상일 경우라도 모든 건물소유주와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야 함.

⇒ 건물임대계약서(부동산 명도란)상의 임대개시일이 반드시 접수일 이전이어야 함

○ 무상사용승낙서는 부모, 형제, 기타 건물소유(임대)권자가 교습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기재(반드시 건물소유권자 인감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)

○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: 전문대학졸업이상의 졸업증명서, 졸업증서, 실기교사 자격증 원본

참고사항

☞ 유해업소 존재여부, 건축물대장 확인은 설립예정자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본 안내는 교습소 신고를 위한 최소한의 설립 기준이므로 건물임대 및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에 건축물관리대장과 예정 시설표명도를 지참 하시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세부사항에 대해 담당자와 상담하신 후 교습소 설립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교육지원청 학원관리담당(☎강남어학원, 직업기술 : 3015-3462, 강남보습학원, 강남 교습소, 서초어학원 : 3015-3463, 서초 보습학원, 서초 교습소, 예능학원, 독서실 : 3015-3466)으로 문의

[교습소 민원접수 이후 안내]

□ 민원처리 기한

-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서류검토, 현장방문확인, 등록업무처리 등의 단계를 거치므로 접수일로부터 설립은 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.

□ 교습소 운영

- 교습소등록완료 전에 원생모집을 하거나, 강의 등을 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등록이 지연되거나 본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신고증명서 받기

-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고증명서를 찾아가시라는 연락을 받으면,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찾아가셔야 합니다.
- 교육지원청 방문 시 성범죄조회동의서를 지참하고, 본인이 직접 교육지원청에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- 교육지원청 근무시간(09:00 ~ 18:00),(토. 일요일 및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음)

□ 교습비 등 통보

- 담당공무원 안내를 받아 교습비등 통보서 서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세무서등록

-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서 사업자등록을하시고, 폐원 시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, 교습소신고증명서는 교육지원청에 반납하시고 폐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(미신고시 과태료 500,000원 부과)

[교습소 설립(변경)시 구비서류]

| 설립 | 위치변경 | 교습자 변경 |
|---|---|---|
| 1. 신고서(인터넷,교육지원청 비치) 2. 교습소의 위치도 3.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(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각 1부) 4.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5.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지참 6. 건물사용증명서류 (타인소유시) - 건물임대계약서 7.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(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서, 자격증 등) 8. 사진(3×4) 2매 | 1. 신고서(인터넷,교육지원청 비치) 2. 교습소의 위치도 3.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(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각 1부) 4.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5. 건물사용증명서류 (타인소유시) - 건물임대계약서 6. (구) 신고증명서 7. 사진(3×4) 2매 | 1. 신고서 2.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3. 건물사용증명서류 (타인소유시) - 건물임대계약서 4.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지참 5.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(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서, 자격증 등) 6. (구) 신고증명서 7. 사진(3×4) 2매 8.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| 명칭변경 | 교습과목변경 | 시설변경 |
| 1. 신고서 (인터넷,교육지원청 비치) 2. 구 신고증명서 3. 사진 2매 | 1. 신고서 (인터넷,교육지원청 비치) 2. 구 신고증명서 3. 사진 2매 4. 기타 | 1. 신고서 (인터넷,교육지원청 비치) 2. 평면도 3. 구 신고증명서 4. 사진2매 (일시수용인원 변경 시) |
| 휴원 | 폐원 | |
| 1. 신고서 (인터넷,교육지원청 비치) | 1. 신고서 (인터넷,교육지원청 비치) 2. 구 신고증명서 | |

※ 가능한 본인이 서류지참 방문해주시고,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,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, 피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4호서식]

교습비등 영수증 원부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|
| 일련번호: | | 연월(분기): | |
| 납부자 | 등록번호: | 성명: | |
| | 생년월일: | 교습과목: | |
| 납부 명세 | 교습비 | 기타경비 | |
| | | | |
|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| | | |
| 년 월 일 | | | |
| 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 (서명 또는 인) | | | |

교습비등 영수증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|
| 일련번호: | | 연월(분기): | |
| 납부자 | 등록번호: | 성명: | |
| | 생년월일: | 교습과목: | |
| 납부 명세 | 교습비 | 기타경비 | |
| | | | |
|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| | | |
| 년 월 일 | | | |
| 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 (서명 또는 인) | | | |